

## 강의료 및 제 수당 지급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.)강의료 및 제 수당 지급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8.3.1.)

**제2조 (강의의 구분)** 본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.
2. 국내외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.
3. 전임교원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.
4.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.

**제3조 (강의료 지급 기준)** 강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(개정. 2018.3. 1)

1. 강의시간 단위는 보통강의는 **50분** 수업을 1시간으로 한다.  
**(단, 토요일은 원칙으로 45분을 1시간 수업으로 한다.)**
2. 본교 행사(체육대회, M.T, 실습 등) 및 본교 사정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의료는 지급 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.
3. 출장 및 휴강 시 강의료는 지급하되, 기 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을 필 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책임시간 미달)**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간 수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5조 (강의료 정액)** 본교의 시간당 강의료 지급 정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.

**제6조 (특강료)** 초빙강사(국내·외)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의료 지급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초빙강사(국내·외)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특강료를 증액 지불할 수 있다.
2.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본교 겸임교수 임용규정에 따른다.
3. 외국인 강사의 강의료는 고용계약서에 따른다.

**제7조 (강의료 지급의 특례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료 지급을 별도로 한다.

1. 수강인원이 **80명 이상인 경우**, 강의료 정액의 **20퍼센트**를 추가 지급한다.  
(개정 2018.3.1.)  
**(단, 실습 및 토요일 수업 과목은 제외한다.)**

**제8조 (강의료 지급 기준일)** 강의료 지급일은 4주 단위가 지난 첫 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1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1.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.